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838 발의연월일: 2025. 6. 13.

발 의 자:정태호·강준현·신영대

이수진 · 김성환 · 황명선

이학영 • 박홍배 • 손명수

김주영 · 차규근 · 용혜인

김태년 • 권향엽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인권 또는 환경 침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피해자 지원 및 분쟁 해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권·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(안 별표 2 제72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·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83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에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2. 「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・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